

광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5228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A (개명 전: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석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은숙

변론 종결 2020. 12. 10.

판결 선고 2021. 1. 14.

제 1 심 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 30. 선고 2019가단73236 판결

주 문

1.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에 관하여 2015. 12. 26. 체결된임차권양도양수계약을 16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지급하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사해행위의 전부 취소 및 원물반환을 청구하였다가,이 법원에서 사해행위의 일부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고, 원물반환 청구를 가액배상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9. 9. 11.경 신호등, 씨씨티브이 등의 도, 소매업,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C와 2010. 1. 14. 혼인신고하여 법률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2016. 10. 27. 협의이혼 신고를 한 전배우자이다. 나. C는 위 혼인기간 중 E의 사업을 영위하며 부부 공동재산을 형성하였고, 피고는 C와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두고 양육하면서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 산하 순천세무서장은 2016. 4. 29.부터 2016. 7. 10.까지 E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고, E가 2011년 사업연도부터 2015년 사업연도까지 수입금액을 법인계좌가 아닌 대표이사 C의 개인계좌로 송금 받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매출 누락한 금액 등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C에게 상여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득처분을 하였다. 한편 E는 2016. 9. 30. 폐업하였다.

순번	소득종류	사업연도	소득귀속연도	소득금액
1	상여	2011. 1. 1~ 2011. 12. 31.	2011	277,220,676원
2		2012. 1. 1~ 2012. 12. 31.	2012	261,772,818원
3		2013. 1. 1~ 2013. 12. 31.	2013	248,094,932원
4		2014. 1. 1~ 2014. 12. 31.	2014	308,597,412원
5		2015. 1. 1~ 2015. 12. 31.	2015	238,562,719원
합 계				1,334,248,557원

라. 순천세무서장은 2017. 6. 8. C에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각 사업연도별 종합소득세 5건
합계 452,517,960원을 추가로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C는 2019. 3. 15. 기준으로 가산금 112,676,480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565,194,44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있다(원고의 C에 대한 위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바. C는 2015년 말경 피고와 협의이혼을 논의하면서 C가 소유하던 전남 곡성군 F답 1,371㎡(이하 'F
토지'라 한다)를 2015. 12. 2. 피고에게 증여하고, 2015. 12.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는 2015. 12. 7. 자신의 신탁 계좌에서 피고에게 98,000,000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사. C는 2015. 12. 1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임차권(이하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무렵 임대인인 D 주식회사에게 위
임차권 양도통지를 하였다.

아.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당시 C는 이 사건 임차권 외에 50,000,000원 상당의 E의 주식 및
합계 7,364,064원의 금융기관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

자.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이후 피고는 D 주식회사와 2019. 6. 12. 이 사건 임차권의 임대차
기간을 2020. 6. 9.까지로 연장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182,630,000원으로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을
제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로부터의 체납처분이 예상되자 피고와 가장이혼을 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한
것이고, 설령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이 C와 피고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C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당시에는 부과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도 아니므로, C의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상태가 아니었다. 또한 피고는 2015. 12.경 C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그 재산분할로 C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사해행위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법리

가) 과세관청이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을 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납세의무는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성립한다(대법원 2018. 10.25. 선고 2018다210140 판결 참조).

나)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5343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며, 그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아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이치는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재산분할협의를 가진 다음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구체적 조세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나아가 사해행위의 피보전채권이 되는 조세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과 증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살피건대, C에 대한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일인 2015. 12. 16. 이전인 각 해당연도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각 연도 12. 31.)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1년도부터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한편,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의 경우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일인 2015. 12. 16. 이후인 2015. 12. 31. 그 납세의무가 성립하나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이전에 이 사건 소득처분의 근거가 되는 E의 매출 누락 및 해당 돈의 C로의 송금이 이루어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원고의 소득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져 2015. 12. 31.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가까운 장래에 납세의무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그 개연성이 현실화 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중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분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따라서, 2011년도부터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그 가산금을 모두 포함한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전부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여부에 관한 판단

1) 가장이혼에 따른 허위의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협의이혼에 있어 이혼하려는 당사자 쌍방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의 유무에 관하여 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간에 일응 일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함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 할 것이 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5957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갑 제1, 13, 18, 19, 21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C와 피고가 협의이혼 이후인 2019. 2.경에도 자녀들을 동반하여

함께 출국하여 필리핀 세부로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실, ② 협의이혼 이후 피고를 대표자로 하여 2018. 2. 28. 설립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C가 운영하다가 폐업한 E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G의 일부거래명세서 및 견적서에 C의 이름이 견적담당자 내지 출고확인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또한 피고 명의로 된 다른 사업장인 H에서 2018. 11.경부터 2019. 2.경까지 작성된 다수의 거래명세서에도 출고확인란에 C의 서명이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을 제1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위 G를 피고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 I가 1인 주주로서 이를 경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와 C 사이에는 3명의 미성년자녀가 있어 이혼 후에도 여행 등 교류를 가질 수 있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와 C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전혀 없이 오로지 조세채무 면탈 등을 목적으로 가장이혼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사해행위인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C의 무자력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당시 C는 보증금 1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차권 외에 50,000,000원 상당의 E의 주식 및 금융기관 예금 잔액 7,364,064원 등 합계 57,364,064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당시 이미 성립하고 있었던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액은 452,517,960원¹⁾이었으므로,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당시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하다.

나) 재산분할로서의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1) 관련법리

(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볼 때,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3516 판결 등 참조).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데,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등 참조). 이때 채무자의 재산분할이 상당한지 여부는 민법 제839조의2제2항이 정한 재산분할의 일반원칙에 따라 판단하되, 이혼한 당사자 일방의 이익과 채권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재산분할이 분할자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것인지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현행 부부재산제도는 부부별산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부부 각자의 채무는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고,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특히 파탄 이전의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참조).

(다)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므2230 판결 참조). 그리고 협의이혼을 예정하고 미리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에도 그 기준일에 관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피고와 C의 협의이혼 신고 당시 분할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은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① E의 주식

가액 50,000,000원, ② 금융기관 예금채권 56,537원(= 10,191원+ 9,839원 + 36,507원)2), 3 165,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임차권, 4 12,201,900원상당의 F 토지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이 사건 임차권과 F토지는 이혼신고일 이전에 피고에게 이전되었지만 재산분할로서 이전되었으므로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판단한다).

한편, 원고는 원고가 2015. 12. 7. 피고에게 이체한 98,000,000원도 재산분할 대상인 적극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혼신고일)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바, 을 제1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돈은 2015. 12. 7. 피고에게 이체된 뒤 곧바로 J 등에게 이체되어 이혼신고일인 2016.10. 27.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인 적극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다.

(나) 이혼신고일 당시의 분할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혼인기간 중 피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C가 E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피고와 자녀들을 부양하며 부부공동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같은 상황에서 C가 E의 매출금 중 일부를 개인 계좌를 이용하여 이를 송금 받았는데, 이와 같이 송금 받은 돈이 C만을 위한 특유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없고, C가 당초 E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과 마찬가지로 이는 부부공동재산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3이에 원고가 위와 같이 매출 누락한 수입금액 등에 대해 C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한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신원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무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채무는 피고와 C 사이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225,259,523원[= 227,258,437원(= 50,000,000원 + 56,537원 + 165,000,000원 + 12,201,900원) - 452,517,960(본세)]이고,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와 C의 혼인생활 및 혼인기간,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게 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정당한 재산분할비율은 C 50%, 피고 50%라고 봄이 타당하며, 피고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112,629,761원[= (-)225,259,523원 × 1/2]으로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는 C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피고가 재산분할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는 부담하지 않은 채, 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중 오로지 적극재산인 F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차권을 피고가 양도받아 이를 취득한 바, 이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양도양수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C로부터 정당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 사건 임차권을 양수받은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C의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전혀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가. 사해행위의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 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등참조).

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에서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이후에 임대차계약이 연장되면서 그 임대차보증금도 2019. 6. 12. 182,630,000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이 사건임차권에 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실질적 가치가 달라졌고, 임차권양도양수계약자체를 취소하여 임대인에게 위 계약의 취소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임차권 자체의 회복을 명하게 되면 당초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② 또한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19. 6. 12. 연장 계약에 따라 2019. 6. 10.부터 2020. 6. 9.까지로 연장되었으나, 이후 추가로 연장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제출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에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이 사건 임차권이 소멸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피고가 C에게 이 사건 임차권 자체를 원물반환하는 것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임차권의 양도 당시 가액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 당시 이 사건 임차권의 가액은 그 당시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액인 165,000,00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임차권양도양수계약은 16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에서 감축하고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재판장 판사 김평호, 판사 김혜진, 판사 김종근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도 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인 2015.12. 31.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되었으므로,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대법원 2000. 9.26. 선고 2000다30639판결 참조).

2) 이혼신고일인 2016. 10. 27. 기준 원고의 예금채권(갑 제10호증의 2, 4)